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95,408,944	14,862,268
일반회계	473,858,413	14,215,752
특별회계	21,550,531	646,516
기타특별회계	21,550,531	646,516
상수도사업	2,649,603	79,488
하수도사업	2,245,093	67,353
수질개선	8,621,299	258,63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18,892	15,567
의료급여기금	645,814	19,374
소득특화사업	5,538,382	166,151
농공단지조성사업	364,916	10,947
공영개발사업	786,301	23,589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80,231	5,40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2,791,77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